

『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청소년육성 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,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
 -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해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(안 제4조)
-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
 -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 및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하는 민간기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(안 제5조, 제6조)
-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 마련
 -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와 복지지원에 대한 근거 명시(안 제7조)

-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 마련
 -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자율적인 감시고발 활동 지원 근거 마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, 제11조, 제16조, 제27조, 제47조, 제49조
 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, 제53조, 제54조, 제60조
 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지원,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,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의 지원 대상 사업을 명기하였고,
- 안 제5조, 제6조에서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,

- 안 제8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